농어민기본소득법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59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이원택・임호선・윤준병

김문수・박홍배・정준호

조 국 · 문대림 · 이병진

문금주 · 송옥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농어업·농어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어가 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

특히 수산업은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어촌사회 유지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상이변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소득이 줄고 있고 고령화로 어민수가 2000년 25만명에서 2023년 8만 7천명으로 급감하는 등 어촌도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형편임.

한편, 농어가에 대한 국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

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또는 농어 민수당(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공 익직불금 및 농어민수당의 지원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 께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별 농어민에게 영농어 규모 등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일 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어민 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 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 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어민기본소득이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 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국가는 농어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농어민은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민기본소득을 건전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함(안제4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농어민기본소득 정책 의 기본방향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의 운영 개 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사. 시·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 아.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 주 또는 농어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에 종사하여 얻 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어민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

- 자.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정보의 제공, 자료조사, 농어민기본 소득의 지급 결정, 지급 시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차.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민기본 소득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어민기본소득과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 카.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정지, 수급권의 상실, 농어민기본소득의 환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농어민기본소득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 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양식업을 말한다.
- 2.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4.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5.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6. "농어민기본소득"이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
- 7.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8. "수급자"란 이 법 제17조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어 농어민기본소득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 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농어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또는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농어민의 권리와 책임) ① 농어민은 농어민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이 법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민기본소득을 건전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2장 농어민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농어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민기 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농어민기본소득의 목표 및 추진 방향
 -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3.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 법령 정비
 - 4. 그 밖에 농어민기본소득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 ①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민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 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
 - 4. 농어업 관련 기관의 대표
 - 5.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농 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2.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4. 농어민기본소득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5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련 부처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조정 실무위 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어민기본소득의 신청 및 지급

제13조(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범위) ① 농어민기본소득은 다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
 - 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나.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 업에 종사하는 경우
 - 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어업종사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
 - 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 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 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경우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업종사자.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

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자격 및 수급권의 산정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① 수급권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정보의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자료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농어민기본소 득 지급신청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농어민기본소득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자등이 제1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각 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의 결정 등)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6 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한 후 시·도지사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신청서를 보내 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민기본소득 수 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결정 내용을 직접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결정한 사람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2조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도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 제19조(농어민기본소득의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 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농어민기본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0조(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의 보호)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민기본소득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 된 계좌(이하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 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 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기본소 득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만이 농어민기본 소득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어민기본소득과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④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사후관리

- 제21조(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기 본소득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 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 는 달까지는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정지한다.
 -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신청 직전 연도 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체의 경영주가 신청 직전 연도 에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3.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4. 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5. 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수급권의 상실)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국외로 이주한 경우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되는 경우
- 제23조(농어민기본소득의 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기본소 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환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 2. 제21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농어민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농어민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농어민기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농어민기본소득(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권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4조(신고) 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1.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 2. 제22조 각 호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5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 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6장 농어민기본소득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26조(기본소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소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제27조(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제28조에 따른 차입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비용
 - 2. 농어민기본소득을 위한 계획 수립, 조사 ·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
 - 3. 제28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 제28조(차입금) ①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2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

에 이입한다.

- 제3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수 있다.
- 제31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 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 제32조(이의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바로잡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

- 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시효)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23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34조(농어민기본소득의 우선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기 본소득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별, 지역별 대상을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농어민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5조(조사·연구) ① 국무총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과 관련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6조(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농어민기본소 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 제3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